

2025년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지역 소공인 업체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 홍보로 인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소공인 업체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 홍보물 제작을 통한 매출 증대 기여

다. 사업기간 : 2025. 05월 ~ 10월

라. 사업내용 : 소공인 업체의 카탈로그 국문 또는 영문 제작 비용 지원

○ 카탈로그 인쇄 기본 사양

내 용	기본 사양
인쇄부수	1,000부
인쇄방식	4도 양면 옴셋 인쇄(CTP 출력)
서지규격	A4(210mm×297mm)
면 수	8면 이내
재 질	210g 랑데부
제 본	중철 제본(점지 가능)
코 팅	무광 코팅

2. 세부 내용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22개사
- 지원대상 : C22,C24~C31업종 10인 미만 소공인(일부지역 제외)

산업분류 코드	주요업종	산업분류 코드	주요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동탄 1~9동, 병점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지역 제외

○ 지원방법

- 다국어 브로슈어 및 카탈로그 제작 비용 지원
(1개사 당 최대 150만원(VAT 제외))
(제작형태는 카탈로그, 브로슈어, 전시회용 홍보물로서 최종 제작물은 종이 형태로 함)
- 공급가액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공급가액 150만원 초과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카탈로그제작 지원 관련 예시>

예시) 센터지원금(1,500,000원) 초과일 경우

공급가액 (A)	부가세 (B)	총액 (C=A+B)	센터 지원액 (D)	업체 자부담액 (E)
2,000,000원	200,000원	2,200,000원	1,500,000원	700,000원

예시) 센터지원금(1,500,000원) 이내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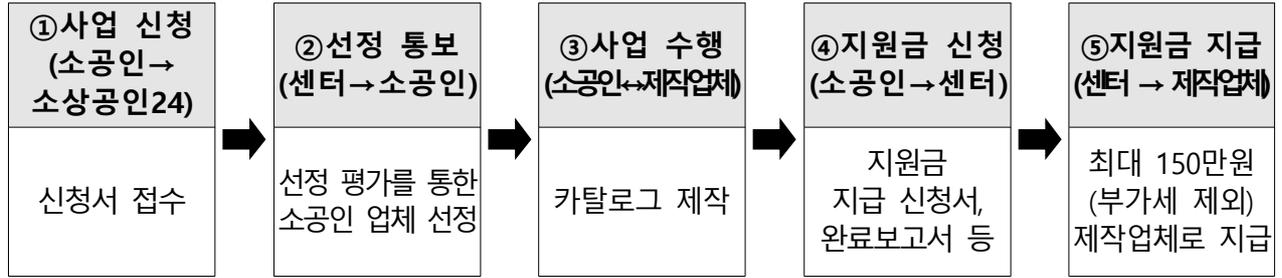
공급가액 (A)	부가세 (B)	총액 (C=A+B)	센터 지원액 (D)	업체 자부담액 (E)
1,350,000원	135,000원	1,485,000원	1,350,000원	135,000원

- 모집기간 : 04월 30일(수) ~ 05월 23일(금)

※ 모집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한 연장 가능

- 지원업체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기업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나. 지원 절차



다. 세부 추진 절차

절차	업무	세부내용
①	사업 신청	- (소공인)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소상공인24 신청 - (센터)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②	선정 통보	- (센터) 심사평가 및 지원 소공인 선정 - (센터→소공인) 선정 소공인 대상 지원금 신청 관련 개별 안내
③	사업 수행	- (제작업체↔소공인) ·기한 내 제작 업체 선정 및 제작 진행 ·제작 업체 선정방법 : 화성시 소재 인쇄/디자인 업체 중에서 복수 견적을 받아 최소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
④	지원금 신청	- (소공인→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 준비 및 작성하여 제출
⑤	지원금 지급	- (센터→제작업체) · 150만원 한도 내 지급 (부가세 제외)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통보 후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제작이 완료되지 않거나,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제작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제작업체를 변경 및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 부적격 등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존 지원사업 수혜의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해당사업 지원 전 센터 사업에 제작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지원 불가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 유의사항

- 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제작업체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사전 센터 협의 없이 지원 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제작업체는 화성시 소재 인쇄/디자인 업체 중에서 복수 견적을 받아 최소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
 - 당해 센터사업(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수혜업체는 제작업체로 선정 불가하며, 당해 제작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 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 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제작업체 선정 불가
 - 제작 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제작업체 간 해결해야 함
 - 선정 업체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기간이 지난 이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제작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시켜야 함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견적서(비교 견적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구분	필수항목	필수기재사항
1	견적일	사업모집기간 내
2	공급받는자	사업신청 업체명
3	공급하는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날인
4	견적내용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 원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 규격, 사양 기입 상호 가격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

○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및 화성시 시설(센터) 운영 및 자율 사업 지원기준(안)에 따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당해 연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시
지원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해당사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공동연구회,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스마트 도약 지원, ESG경영 친환경 제조환경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해당없음

- 단,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지원한도를 7백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기업의 누적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여야 함

3. 신청 안내

가.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 접수**

나. 신청 기간 : 04월 30일(수) ~ 05월 23일(금)

다. 신청 서류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必)
⑤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부가가치세고화세표준증명원(2023-2024)
⑦	주업증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서명 필수) 각 1부
⑧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⑨	추진 계획서 [서식2]
⑩	확약서 [서식3]
⑪	지원 사업 대상선정 평가 기준표 [서식4]
⑫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서류 일부 대체가능

2) 선정 승인 이후 제출서류 (※모든 일정은 선정 이후 통보)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카탈로그 완성본 3부
③	완료보고서
④	제작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원본 각 1부
⑤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제작업체 통장 사본
⑦	세금계산서
⑧	자부담 입금 확인증 (부가세+지원금초과금액)

4.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민가영 매니저	031-354-3641	031-354-3642	hsmfsc@gmail.com